

##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(공시송달)

「보험업법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, 과태료 금액,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3월 28일  
금융위원회

### 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 명/기관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
보험설계사 김영우	890826-*****	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345번길
보험설계사 김남호	611113-*****	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05

### 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

### 3. 서류의 내용 :

## 가.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

처분 대상자	처분 원인	근거 법규	처분내용
보험설계사 김영우	프라임에셋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영우는 2016.4.29.~2016.6.30. 기간 중 보험계약자 9명으로부터 농협생명보험(주)의 '(무)행복열매NH연금보험' 9건(초회 보험료 1.5백만원/모집수수료 4.7백만원)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,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린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97조, 제209조	과태료 370만원
보험설계사 김남호	보험설계사 김남호는 2013.3.28.~2015.6.23.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(주)의 손해보험계약 6 건(초회보험료 총 2.6백만원)을 (주)비앱시금융서비스(舊 (주)가이브금융서비스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○○○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.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97조, 제209조	과태료 160만원

## 나. 유의사항

- 위반사실,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,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,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.
-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,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.

4.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2100-296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